

의안번호	제465호
의결 연월일	2013년 월 일 (제319회)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박문희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4월 2일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문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4월 2일
발 의 자 : 박문희·이광진·김종필
강현삼·김영주·김재종
임헌경 의원(7명)

1. 개정이유

-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를 완화하여 대원의 부담을 경감하고,
-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완화 (안 제14조)
-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 보장 (안 제31조)

3. 조 례 안 : 불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5. 관 계 법 규 : 불임

6. 비 용 추 계 서 : 해당없음

7. 관련부서 협의 :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와 협의

8. 입 법 예 고 결 과 : 의견 없음 (13. 3. 12. ~ 4. 1.)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까지에”를 “까지의 규정에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약간 명”을 “몇 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없는 경우에는”을 “없을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대하여는”을 “대해서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5호 중 “레카차”를 “견인차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개시일”을 “시작일”로 한다.

제14조제5호 중 “교육훈련과 출동(동원)”을 “교육·훈련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26조제2항 중 “상당”을 “상응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,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·도연합회 임원의 임기 중 시·군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·도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.

⑤ 시·군연합회 임원의 임기 중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·군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.

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대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까지에</u> ----- -----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까지의 규정에</u> ----- -----.
제5조(조직) ① (생 략) ② ----- -- <u>약간 명</u> -----.	제5조(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 <u>몇 명</u> -----.
제7조(대장 등의 임무) ① (생 략) ② ----- ----- <u>없는 경우에는</u> -----.	제7조(대장 등의 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없을 때에는</u> -----.
제9조(대원의 임용) ① ~ ② (생 략) ③ ----- <u>대하여는</u> -----.	제9조(대원의 임용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대해서는</u> -----.
제10조(임용기준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1. ~ 4. (생 략) 5. <u>레카차</u> ----- 6. ~ 7. (생 략) ③ (생 략)	제10조(임용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견인차</u> ----- 6. ~ 7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(생 략) ② ----- <u>개시일</u> -----.	제11조(대장 등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시작일</u> -----.
제14조(해임사유) (생 략) 1. ~ 4. (생 략) 5. <u>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과 출동(동원)에 불참한 경우</u> 6. ~ 7. (생 략)	제14조(해임사유)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----- <u>교육·훈련</u> ----- 6. ~ 7.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출동수당) ① ----- ----- <u>범위 내에서</u> -----. ② ~ ④ (생 략)	제23조(출동수당) ① ----- ----- <u>범위에서</u> 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요양보상) ① (생 략) ② ----- <u>상당</u> -----.	제26조(요양보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상응</u> -----.
제31조(의용소방대연합회 등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1조(의용소방대연합회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시·도연합회 임원의 임기 중 시·군연합회장 또는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·도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<u>시·군연합회 임원의 임기 중 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</u>

현행	개정안
<p data-bbox="193 456 363 495"><신설></p> <p data-bbox="193 607 395 645">④ (생략)</p>	<p data-bbox="823 309 1428 416">시·군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.</p> <p data-bbox="823 456 1428 564">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대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.</p> <p data-bbox="831 607 1241 645">⑦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

관 계 법 규

□ 소방기본법

○ 제7장 의용소방대

제37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등)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시·읍·면에 의용소방대(義勇消防隊)를 둔다.

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, 그 설치·명칭·구역·조직·임면(任免)·정원·훈련·검열·복제·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(隊員)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]

제38조(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)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(非常勤)으로 한다.

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]

제39조(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)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·훈련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

②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]

제39조의2(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) ① 재난 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소방방재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 증진을 위하여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연합회의 조직·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]

참 고 자 료

□ 소방방재청 전국 시·도 의용소방대 조례 표준준칙(안)

- 소방방재청 : 방호조사과-2887(2012.5.23)

「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임기 관련 시·도 조례 표준안 시달」

○ 의용소방대연합회

(연합회 임원의 임기보장) ① 시·도 연합회 임원의 임기 중 시·군 연합회 회장 또는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·도 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.

② 시·군 연합회 임원의 임기 중 의용소방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시·군 연합회 임원의 잔여임기를 보장한다.